

경제정책조정회의 안건

해외 M&A 활성화 추진방안

2007. 10. 18

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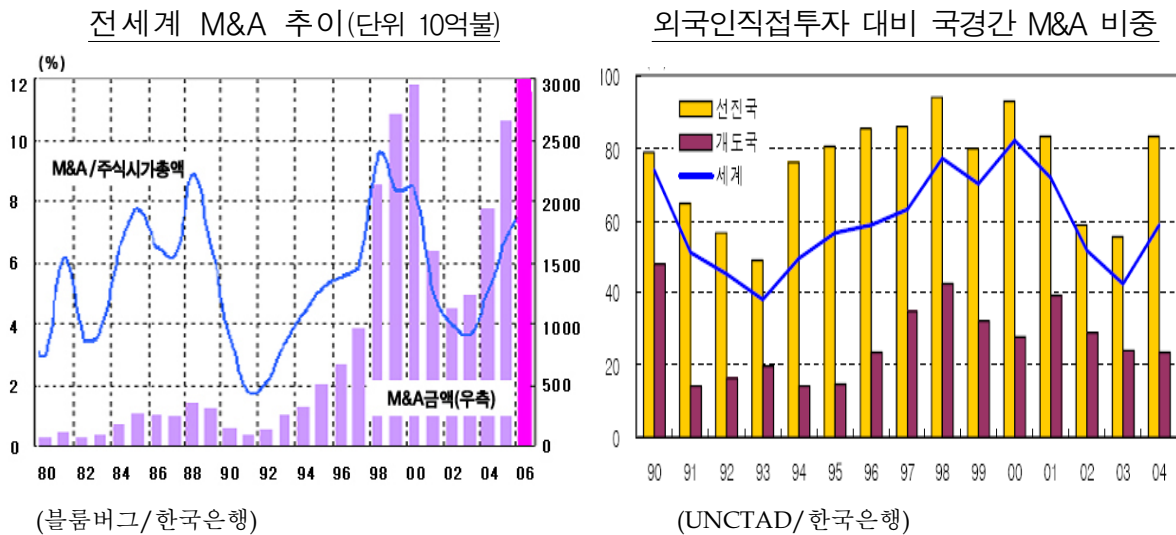
목 차

I. 최근 국내외 M&A 동향	1
1. 전세계 M&A 동향 및 특징	1
2. 우리나라의 해외 M&A 동향	4
II. 해외 M&A의 필요성과 제약요인	6
1. 해외 M&A의 필요성	6
2. 우리 기업의 해외 M&A 추진시 제약요인	7
III. 해외 M&A 활성화 정책	8
1. PEF의 해외 M&A에 대한 규제 완화	9
2. 해외 M&A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	15
3. 해외 M&A 지원 인프라 구축	19
4. 해외직접투자 절차 완화	23
IV. 세부 추진일정	26

I. 최근 국내외 M&A 동향

1. 전세계 M&A 동향 및 특징

- 전세계 M&A(국경간 M&A¹⁾ 포함)는 '00년 이후 침체를 보이다가, '03년 하반기부터 회복되어 '06년에는 3.5조불 수준을 기록
- 국경간 M&A 역시 전체 M&A 동향과 유사한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, 최근 빠른 증가세를 기록



□ 세계 M&A 성장배경

- (세계 증시 여건 호전) M&A는 기업가치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계 증시 여건의 호전이 M&A 성장을 유도
- (기업들의 풍부한 현금 보유) '03년 이후 세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어 풍부한 현금자산을 보유
- (풍부한 글로벌 유동성) '01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금리인하, 잉여유동성의 금융시장 투자 증가 등으로 풍부한 자금 축적

1) 통상 매도자와 매수자의 국적이 다른 국경간(Cross-Border) 기업의 인수·합병을 지칭

□ 최근 세계 M&A 시장의 특징

① 동일업종 내 선도기업간 초대형 합병빈발 등으로 대형 M&A 비중 상승 및 건당 M&A 규모 증가

* 대형 M&A 건수(1,000억불 이상): '03년 9건 '06년 상반기 31건
 건당 규모(억불): '03년 0.6억불 → '06년 상반기 1.4억불

② M&A 시장에서의 사모펀드의 비중 증가

- 거대한 투자자금을 활용한 사모펀드가 M&A를 주도하면서 시장 팽창 및 적대적 M&A 거래 증가 등 초래

* '06년 상반기중 사모펀드가 주도한 M&A는 전체 M&A의 14%를 점유

< 사모펀드 관여 M&A 동향 >

구 분	'02	'03	'04	'05	'06.上
거래액 (억불)	980	1,120	1,930	2,560	2,520
비중 (%)	8.6	9.2	9.9	9.6	13.9

자료 : Bloomberg / 한국은행

③ 현금 지급 및 LBO(차입매수)에 의한 M&A 증가

- 과거에는 재원조달 방법으로 주식발행이 선호되었으나, 최근에는 기업들의 풍부한 현금자산, 사모펀드 등의 M&A 참여 증가로 현금지급 및 LBO 비중이 크게 증가

* LBO(Leveraged Buy-Out)는 인수대상 기업 자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주로 사모펀드 등이 이용

< M&A 재원조달 비중 >

	현금	주식발행(교환)	현금+주식	LBO	기타
'98~'00	13%	58%	19%	1%	9%
'05~'06.上	40%	19%	30%	8%	4%

자료 : Lehman Brothers, 한국은행

④ 중국·인도 등 아시아 국가의 M&A 활동 증가

☞ 별첨 : 중국·인도의 M&A동향

인도 · 중국의 M&A 동향

◆ 중 국

- '02년 이후 선진기업 인수를 가속화하여 단기간내 에너지 확보 및 기술수준 제고를 도모

* '02년 이후 중국 기업의 해외 M&A는 연간 10억불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며, '05년중 52.8억불 기록

< 중국의 해외 M&A 동향(단위 : 억불) >

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
12.8	1.0	4.7	4.5	10.5	16.5	11.3	52.8	149.0

자료 : UNCTAD

- 최근 주요 M&A사례('06년)

- 중국해양석유총공사 : 나이지리아 SAPETRO 인수(석유, 22.7억불)
- 중국석유화학공집단공사 : 러시아 Udmurtneft 인수(석유, 35억불)
- Suntech Power : 일본 MSK 인수(전지산업, 3억불)
- 란싱그룹 : 프랑스 Rhodia 인수(실리콘, 4.5억불)

◆ 인 도

-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화학 · IT · 의료분야에 대해 재벌 그룹이 주도적으로 공격적인 해외 M&A를 추진

< 인도의 해외 M&A 동향(단위 : 억불) >

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
0.1	1.3	9.1	22.0	2.7	13.6	8.6	26.5	47.4

자료 : UNCTAD

- 최근 주요 M&A사례

- Havell's India : 독일 SLI Sylvania 인수('07년, 3억불)
- TaTa Steel : 영국 Corus(철강회사) 인수('07년, 113억불)

2. 우리나라의 해외 M&A 동향

- '97년 외환위기 이후 정체되었던 해외직접투자가 '03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, M&A를 통한 해외투자는 정체 상태임
 - 해외직접투자가 주로 그린필드 투자위주로 이루어져서 M&A 방식은 전체 해외직접투자의 5~10% 수준에 불과
 - * 선진국의 경우 M&A의 해외직접투자비중은 80% 수준
 - 그린필드형 해외투자로는 원자재, 시설, 자본, 인력, 기술력, 시장지배력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영자원을 단기간에 획득할 수 없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한계

<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 M&A 동향(단위 : 억불) >

구 분	'98	'99	'00	'01	'02	'03	'04	'05	'06
해외직접투자 (A)	48.1	33.3	50.7	51.6	37.0	40.6	59.9	65.6	107.3
해외 M&A (B)	1.9	11.0	17.1	1.8	1.0	6.6	4.1	4.5	9.2
B/A (%)	4.0	33.0	33.7	3.5	2.7	16.3	6.8	6.9	8.6

주 : 총투자액인 실행액 기준으로 작성(자료 : 수출입은행/UNCTAD)

- 최근 두산, 효성 등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성공적인 해외 M&A가 이루어짐에 따라 해외 M&A에 대한 관심 증대
 - 두산인프라코어는 최근 국내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건설기계 업체 잉거솔랜드의 밥캣 M&A(49억불)에 성공
 - * 밥캣의 인수로 두산인프라코어는 세계 건설기계 업계 순위 7위(종전17위)로 도약
 - 효성도 美 Goodyear社의 생산공장 4곳(미국 2개, 브라질 1개, 룩셈부르크 1개)을 인수(0.8억불)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을 확대(25%→30%)

최근 우리 기업의 해외 M&A 사례

① 두산인프라코어 ⇒ 美 잉거솔랜드社의 건설기기 인수

- '07.7.30, 두산인프라코어는 미국 Ingersoll Rand社의 건설기기 3개 사업부문을*을 49억달러에 인수하는 계약 체결

* Compact Equipment(소형 건설 중장비), Attachment(건설장비 부착용 장비), Utility(암반 파쇄기용 공기압축기, 조명장비 등)

- 두산인프라코어는 동건 M&A를 통하여 세계 7위(중전 세계 17위) 건설기계업체로 성장하게 되며, 인수하는 3개 사업부문 모두 세계 1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

※ 최근 10년간 두산은 국내외 M&A를 통해 성공적으로 기업구조를 전환시켰다는 평가

- '00년대 한국중공업, 고려산업개발, 대우종합기계인수를 인수

- '05년이후 미쓰이 밥콕(영국, '06년), IMGB(루마니아, '06년), 연대유화(중국, '07년), CTI 엔진(미국, '07년), Bobcat(미국, '07년)을 인수

⇒ 이러한 결과, 맥주 등 소비재 중심의 중견그룹에서('95년 자산규모 4조) 중공업 중심(82.3%)의 글로벌그룹('06년 14.2조)으로 도약

② 효성 ⇒ 美 Goodyear社의 생산공장 인수

- '06.9월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를 위해 Goodyear사로부터 Tirecord* 생산공장 4개(미국 2개, 브라질 1개, 룩셈부르크 1개)를 0.8억불에 인수

* 타이어 코드는 타이어의 내구성, 주행성, 안정성을 높이는 보강재

-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타이어 코드 세계 시장 점유율 세계 1위 입지 강화(25→30%)

II. 해외 M&A의 필요성과 제약요인

1. 해외 M&A의 필요성

- 성숙단계에 이른 국내시장을 벗어나 새로운 수익원 창출 필요
 - 국내 경제가 안정적 성장단계에 접어들면서 국내시장이 포화, 기업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기업환경이 크게 변화
 - 따라서 해외 M&A를 통한 새로운 수익원 확보와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
 - * '98.7월 세계 5위 제약사인 美 존슨앤존슨은 연평균 70%이상 고성장하는 인공관절 사업 분야에 진출을 위해 스위스 Deputy를 35억달러에 인수
- 시장지배력 확보, 기업규모의 확대로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
 - 국가간 국경이 의미없는 글로벌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시장주도자로 변화하거나 압도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
 - * '06.1월 조강 생산규모 세계 1위 업체인 네델란드 Mittal은 세계 2위 업체인 룩셈부르크 Arcelor를 436억달러에 인수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확보
 - * '06.10월 인도의 Tata Steel은 영국의 Corus(세계9위)를 인수함으로써 세계에서 5번째 규모의 철강회사로 성장
- 에너지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자원개발 확보
 - 에너지 자원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져 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자원공급 기반의 조성을 위해 해외 M&A 적극 활용
 - * 최근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유전 및 석유회사, 철강회사를 인수
 - 중국해양석유총공사의 나이지리아 SAPETRO 인수(22억불)

2. 우리 기업의 해외 M&A 추진시 제약요인

- 그동안 주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해외 M&A가 미미했던 것은 기업들의 능력부족과 소극적 태도 등에 주로 기인
 - 기업들의 글로벌 경영 수준이 낙후되고 M&A 기획 및 인수기업 운영에 대한 경험·실력이 크게 부족
 - 외환위기 이전 활발히 이루어졌던 글로벌 경영이 실패로 끝나면서 해외 M&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
 - 기업들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높은 대규모 M&A투자보다 소규모 **Greenfield** 투자를 선호

- 다만, 정부 차원에서 개선이 가능한 일부 장애요인도 있음
 - ① 기업 및 사모펀드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상정하지 않는 각종 규제가 해외진출에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
 - PEF의 해외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및 자산운용제한
 - 외국환거래규정상 현지금융활동에 대한 신고수리절차 복잡
 - ② 해외기업 인수를 위한 **M&A Financing** 및 세제지원 취약
 - 금융기관의 소요자금 지원 기능 취약, 해외자원개발 투자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
 - ③ 해외 M&A에 필요한 정보 및 전문인력 부족
 - 산업·시장·기업에 관한 심도있는 고급 전략정보 부족

⇒ 기업들이 수익성·성장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해외 M&A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

※ 정부는 해외진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 개선, 금융·세제지원, 정보제공 등에 주력

III. 해외 M&A 활성화 정책

< 기본 방향 >

1. PEF의 해외 M&A에 대한 규제 완화

- PEF의 역외 SPC 설립 허용 및 자산운용 등에 대한 규제 완화
- 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
- 대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의무 완화

2. 해외 M&A 활성화를 위한 금융·세제지원 강화

- 수은의 해외 M&A에 대한 채무보증 법적근거 명확화
-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 허용
-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적용 확대
-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

3. 해외 M&A 지원 인프라 구축

- 해외 M&A 전문인력 양성
- 해외 M&A 정보수집·제공기능 강화
- 해외 M&A형 해외직접투자 통계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

4. 해외직접투자 절차를 적극 개선

-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완화, 해외직접 투자 수단의 확대
- 30대 계열기업의 현지 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절차 완화

1. PEF의 해외 M&A에 대한 규제 완화

- ◇ 선진국에서는 사모펀드*의 해외 M&A 시장 참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반면,
 - 국내의 경우 해외 투자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 미비 및 자산운용 제한으로 사모펀드의 해외 M&A 활동이 미미
 - * 콜버그 크래비스 로버츠, 블랙스톤 등
- ◇ 해외에서 외국 사모펀드와 유사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역외 투자목적회사 설립 허용 및 자산운용제한 대폭 완화

1] PEF의 역외 투자목적회사(Off-shore SPC) 설립 허용

□ 현 황

- 현행법령은 PEF가 국내에서 설립한 투자목적회사(SPC)를 통한 투자는 규정하고 있으나
 - 해외에 설립한 투자목적회사(Off-shore SPC)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이 미비하여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
- 최근 해외 M&A활동을 위한 PEF의 해외투자 수요가 나타나고 현지에 투자목적회사를 설립·활용할 필요성 대두

☞ 현행 간투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 대상

- 투자대상기업의 주식·출자지분의 10% 이상 투자
- 임원 임면 등 사실상의 지배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투자
- 투자목적회사(SPC)의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투자

□ 개선방안

- 역외설립 SPC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여 PEF의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(다만, 국내 역류 방지 장치* 마련)

* 역외 SPC의 국내자산 투자를 SPC 자산의 5% 이하로 제한

⇒ '07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(현재 입법예고중)

② 역외 SPC에 대한 규제 완화

□ 현 황

- PEF의 경우 경영권 참여, 사업구조·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수익추구를 목적(Buy-out 펀드)으로 도입되어 투자이행, 차입, 채무보증 등 자산운용과 관련한 다양한 제한 존재
- 특히 향후 관련법령 개정으로 설립이 허용될 역외 투자 목적회사(Offshore-SPC)에 대하여 국내 PEF의 자산운용방식을 적용한다면 외국 PEF와 SPC에 비하여 상당히 불리

□ 개선방안

- ① PEF가 Off-shore SPC 지분의 10%이상을 투자하는 경우, 당해 Off-shore SPC에 대해서는 자산운용규제를 적용배제
 - 국내 PEF 및 SPC에 적용되는 투자대상기업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의 보유기간 제한 규정*(6개월 이상) 적용을 배제,
 - * 국내 PEF와 SPC의 경우 경영권 지배 및 구조조정을 통한 수익추구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투자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
 - 또한 투자에 실패할 경우 인수지분의 1개월내 매각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

☞ 간투업법령에 따른 국내 PEF 및 SPC의 자산운용방식 관련 제한

- 출자한 날부터 2년내 출자금액의 50% 이상을 투자(PEF)
- 6개월 이상 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보유
-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에 실패한 경우 인수지분을 1개월내 매각

② 역외 SPC의 경우 국내 SPC에 적용되는 '자기자본 200% 범위내 차입'규제의 적용을 배제

☞ 간투업법령에 따른 국내 PEF 및 SPC의 차입 및 보증 규모 제한

- 차입·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재산의 10%내 허용(PEF)
- 차입금액과 보증금액의 합계는 자기자본의 2배내에서 허용(SPC)

※ 국내 PEF와 SPC에 대해 과도한 차입을 허용할 경우 투자자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국내 PEF와 SPC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 유지

③ 중층적 구조의 SPC 허용

- 해외 M&A시 현지 조세제도를 활용한 세금감면 또는 높은 레버리지 등을 위해 다단계 SPC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중층적 구조의 SPC를 허용

※ 국내 SPC의 경우 1단계 SPC만 가능

④ 역외 SPC에 대해서는 출자자 제한 규정 적용배제

- 현행 간투법 규정에 따르면 국내 SPC의 출자자는 PEF로 한정되어 있음
- 향후 설립이 허용될 역외 SPC는 SPC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를 포함하여 누구나 출자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

⇒ ①~④ '07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(현재 입법예고중)

③ PEF의 해외 부실채권 투자 허용

□ 현 황

- 현행 규정에 따르면 PEF는 국내 금융기관 등이 채권자인 부실채권에는 지분투자를 전제로 투자할 수 있으나 해외부실채권에 대해서는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
- 부실채권의 경우 투자에 비하여 투자이익이 매우 크고 외국 PEF의 경우 별다른 제한이 없으므로 해외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
- * 골드만삭스 등의 경우 국내에서 진로, 대한통운 등의 부실채권을 자유로이 인수하여 수익실현

☞ 간투법 시행령 제131조의6(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운용방법)

- 「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
- 채권금융기관이 부실징후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에 대한투자
- 투자대상기업의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이나 금전채권

□ 개선방안

- 지분투자를 전제로 한 국내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허용과 같은 차원에서 해외 부실채권에 대한 투자를 허용

⇒ '07년 하반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

4 해외 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

□ 현 황

- 현행 공정거래법상 출총제 적용대상 회사*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40/10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금지

* 국내 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소속된 자산 2조원 이상 회사('07.9월말현재 7개 집단 소속 25개사)

- 공정거래법상 출총제 등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국내회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므로 해외 투자만을 위한 PEF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할 필요

□ 개선방안

- 출총제 적용 대상 회사가 해외투자전용 PEF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배제

⇒ '08년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개정하여 반영하고, 추후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관련내용 포함

⑤ 대기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의무 완화

□ 현황 및 필요성

- 대기기업이 PEF 설립시 참여할 경우 기업결합신고의무 규정에 따른 제한이 존재
 -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가 상대회사의 20/100이상 주식취득 하는 경우 기업결합신고토록 하는 규정에 따라 PEF의 LP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도 기업결합신고의무를 부여
- 대기기업의 PEF 참여와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PEF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

□ 개선방안

- '07.7월 개정된 공정거래법('07.11.4 시행예정)에 따르면 회사설립시 주식취득비율과 무관하게 최다출자자에게만 신고의무를 부과
 - 同 법률 시행시기에 맞추어 대기기업의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완화
 - PEF는 GP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최다출자자가 LP인 경우 GP에게 신고 위임을 허용
 - PEF 설립 자체는 대부분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간이심사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신고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
- ⇒ '07.12월까지 관련 고시 개정(기업결합 신고요령, 기업결합심사기준)

2. 해외 M&A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

1 수은의 해외 M&A에 대한 채무보증 법적근거 명확화

□ 현 황

- 해외 M&A는 거액의 금융수요가 수반되기 때문에 해외 현지법인의 차입을 통한 인수가 일반적
 - 특히, 개도국에 대한 대규모 M&A 추진시, 국내외 상업 금융기관들은 **country risk** 부담으로 금융지원에 소극적
 - 현재 수은의 해외 M&A 관련 외국인 앞 채무보증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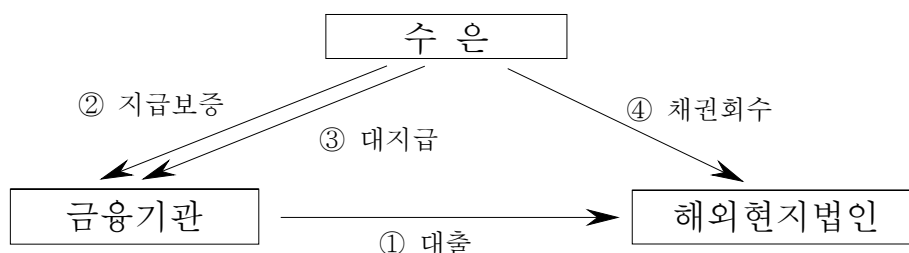
☞ 수은법 제18조(업무) 1항의 9

- 제1호, 제2호, 제4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자금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그 자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경우 그 채무의 보증

□ 개선방안

- 수은 해외 M&A 채무보증 법적 근거 명확화
 - 해외 M&A 채무보증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, 외국인(해외 현지법인)앞 대출에 대해서도 채무보증 지원
- ⇒ '07년 하반기 수은법 개정(현재 국회 계류중)

< 대외채무보증 업무흐름도 >



② 해외 M&A시 수은의 유가증권 취득 · 보증 허용

□ 현 황

- 대규모 해외 M&A의 경우, 대출시장 외에 회사채 발행 등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
 - 특히, 개도국에서 이루어지는 M&A의 경우 해외현지 법인의 신용도, 개도국의 국가리스크 때문에 투자자 모집이 어렵거나 조달비용이 상승
- 현행 수은법상 대외거래 지원을 위한 금융수단이 대출 및 대출에 대한 보증으로 제한되어 있어 현지 회사채 발행시의 지원수단 불비
 - 공·사채 등 유가증권 취득 및 보증에 대한 업무근거 없음

□ 개선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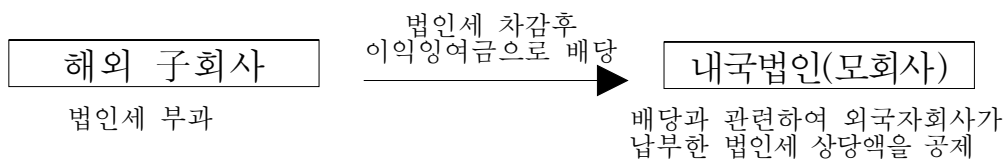
- 해외 현지법인이 발행한 공사채 등의 보증 및 취득을 허용
 - 해외 M&A 자금조달을 위한 채권발행시 보증 등 신용보강 조치를 통해 개도국 위험에 노출된 채권에 대한 투자자 참여 촉진, 기업의 조달비용 절감
 - 수은의 일부 응모 참여로 발행채권의 시장물량 소진 촉진, 발행기업 등의 잔여채권 인수부담 완화
- ⇒ '08년 수출입은행법 개정시 반영추진(관계부처와 협의중)

③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적용 확대

□ 현 황

- 내국법인(모회사)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에 상응하는 외국 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을 내국 법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(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)

* 외국 손회사의 법인세 상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



※ 적용대상 외국자회사의 범위

- 조세조약에 반영된 경우 : 지분율 20% 이상(법인세 상당액의 100% 공제)
- 조세조약에 미반영·미체결된 경우 : 지분율 25% 이상(법인세 상당액의 50% 공제)

□ 개선방안

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현행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범위 확대

- ① 외국손회사(지분율 20% 이상)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하여도 공제 허용
 - ②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외국 자회사의 범위를 조세 조약에 반영여부와 상관없이 의결권 주식 20%이상으로 통일 (공제율은 현행 유지)
- ⇒ '07년 하반기 관련 법령개정(현재 조특법은 국회 계류중이며, 조특법·법인세법 시행령은 준비중)

4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

□ 현 황

- 현행 규정은 내국인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
-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대부분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분투자형태로 이루어지므로 세제혜택을 받기 곤란
- * 일본의 경우 일정 요건하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의 광권 매입비 3.5%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또는 조기 상각 등의 세제혜택 부여한 바 있음

☞ 조세특례 제한법(25조)상 세액공제

- ① 내국인이 다음 시설 중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'09.12.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,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 2. 환경보전시설(이하 중략)
10. 해외자원개발설비

□ 개선방안

-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의 범위에 설비 투자 외에 지분투자도 포함하여 투자세액공제범위 확대
- ⇒ '07년 하반기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(현재 국회 계류중)

☞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 14(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 신설

내국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(지분투자 포함)시 투자금액의 3%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

3. 해외 M&A 지원 인프라 구축

① 해외 M&A 전문인력 양성

□ 현 황

-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은 물론 금융기관·중개기관들이 충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상황
 - 전문인력의 부족은 기업·유관기관내 소극적 분위기를 확산시킴으로써 해외 M&A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- * 현재 한국 M&A 컨설팅 협회, 한국 M&A 협회의 M&A 교육과정은 국내 M&A에 국한되고 대부분 단기로 운영(5~7일)되어 전문가 양성에는 한계

□ 개선방안

- KOTRA에 「해외 M&A 전문가 양성과정」 신설(08.上)하고 대한 상의, 무역협회, 학계, 업계 등 국내외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
- 대학 등 교육기관 등을 활용한 해외 M&A 전문인력 양성 추진
 - KAIST 금융전문대학원 및 주요 경영전문대학원(MBA)*을 통해 M&A 관련 실무위주의 전문교육을 확대 실시
 - * '06년 개교(7) : 고려대, 서강대, 서울대, 성균관대, 연세대, 이화여대, 한양대
 - * '07년 개교(5) : 동국대, 숙명여대, 중앙대, 한국정보통신대, 전남대
 - 국제 대학원에 「해외 M&A 전문가 인증제」 도입,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한 학생에게 전문가 자격증을 교부('08.상)
 - 법학전문대학원(로스쿨, '09년 개교)에도 국제 M&A 과정을 신설하여 전문인력 양성 유도

② 해외 M&A 정보수집·제공기능 강화

□ 현 황

- 해외 M&A를 추진하는 우리기업은 투자대상기업과 대상국 법률·조세제도 등 필요한 정보를 외국계 기업정보회사*에서 개별적으로 수집

* 톰슨파이낸셜, 블룸버그, 시큐리티스, Merger社, Imap社, Aqme社 등

** 국내에서는 WseFN(社)가 투자분석을 위해 각국의 기업정보 DB화를 추진

- 중소기업 등 개별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문제 등으로 해외 M&A 관련정보를 상시적으로 이용 곤란

□ 개선방안

- 대상국 법률·조세·회계 정보, 대상기업 정보 등 M&A에 필요한 1차정보를 KOTRA의 「해외진출 통합정보시스템」에 온라인화하여 활용도 제고('08.上)

- 해외 M&A 현지 agent 물색, 해외 M&A 전략수립 등 On-Line으로 제공하기 힘든 정보는 KOTRA가 기업별 맞춤형 정보서비스를 최소비용으로 제공

- 해외 M&A 컨설팅 : 개별업체에게 대상국가의 산업·시장에 대한 In-Depth 보고서 작성 등 M&A 전략수립을 지원

- M&A 프리미엄 서비스 : 현지 agent, 현장 정보 등을 무역관 등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확보하여 제공

- 산은, IMAP社, M&A International社 등 국내외 M&A 관련기관과 전략적 제휴 추진

* KOTRA-산은간에 국내기업의 해외 M&A 지원을 위한 MOU 체결 ('07.4)

③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기업의 M&A 지원

□ 현 황

- 국내 제조업의 핵심인 부품소재기업을 글로벌 아웃소싱 체계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M&A 등을 통한 대형화·전문화가 요구
 - 자체 정보력이 취약한 대다수 중견,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 M&A 관련 전문 정보 제공 등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
- * M&A가 저조한 이유 (중소기업중앙회, '07.7월, 중소벤처기업 100개사 조사)
: 타겟기업 물색애로(32%), 인수기업 가치평가 곤란(18%), 자금조달(17%), M&A 절차 등에 관한 정보부족(15%)

□ 개선방안

- ① 투자기관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내에 부품소재 「글로벌 M&A 데스크」 설치('07.10월)
 - 글로벌 컨설팅사와 연계하여 우수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을 발굴하고 국내 부품소재기업*에게 정보제공 및 매칭 지원
- * 부품소재특별법 제2조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('07년 9월기준 2,500여개사) 및 부품소재기술개발 참여기업 등 부품소재기업이 지원대상
- ② 산업자원통합로드맵* 수립시 자체 개발 가능한 기술과 해외 M&A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인 기술을 분석('08.上)
 - * 우리나라가 향후 확보해야할 품목별·기술별 중장기 기술개발 목표 및 전략수립('08년 산자부)
- ③ 해외기업 정보 및 네트워크를 축적하여 기업의 해외진출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*을 구축 추진('09년)
 - * 축적된 기업 정보는 주요국별, 산업별로 관리하여 기업에게 상시제공 가능토록 DB화(KOTRA 내 설치)

4 해외 M&A 통계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

□ 현 황

- 그동안 해외직접투자 통계가 M&A형 투자와 Greenfield형 투자에 대한 구분 없이 작성되어,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에 애로

□ 개선방안

- 투자자가 M&A형 투자를 구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신고하도록 관련 서식 개선 (07.4월 외국환거래지침 기개정)
- 수출입은행이 해외 M&A형 직접투자 통계를 작성하여 On-Line으로 제공
 - 국가별, 업종별 등 해외 M&A 관련 세부통계를 작성하고, 통계수요별 제공시스템 구축
- 해외 M&A 투자 현지법인의 사업실적보고서를 활용, 매년 경영성과 분석 제공
 - 성공사례 발굴·분석을 통하여 해외 M&A 활성화를 도모
 - OECD 회원국 M&A 통계를 활용,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M&A 투자 비교 분석

4. 해외직접투자 절차 완화

※ ①~⑤ '07.11월까지 관련 「외국환거래규정」 개정 추진

① 신고수리 요건 완화

□ 현황 및 필요성

- 해외직접투자 신고 수리시 다음 사항을 심사
 - 형식적 요건 :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조세채납자 여부
 - 실질적 요건 : 자금조달 및 투자계획 등의 적정성
- 현재 거주자의 해외직접투자의 경우 실질적 심사요건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실상 신고제도로 운용하고 있으나, 실질심사 가능성에 대한 부담감이 여전히 존재

□ 개선방안

- 현재도 사실상 신고제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일반적 해외투자의 경우 신고수리제를 신고제로 전환
 - 다만, 종전 형식적 심사 사안(금융채무불이행자, 조세채납자 여부)은 제출서류 징구로 확인

	현행		개선
일반적 해외투자 신고수리 요건	형식적 요건(조세채납자 여부등) ⇒ 필수적 심사 실질적 요건(투자 적정성 등) ⇒ 임의적 심사	→	신고수리제 폐지 ⇒ 신고제 전환 * 제출서류 : 조세채납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등
금융보험업에 대한 투자	현행 유지		

②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자회사 투자시 신고절차 완화

□ 현황 및 필요성

- 현지법인금융기관*이 (외국)자회사에 투자할 경우 재경부 신고(수리)가 필요

* 거주자가 설립한 금융·보험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

- 현재 국내 금융기관의 비금융·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 투자의 경우처럼 외국환은행으로 신고수리 기관 완화 필요

□ 개선방안

- 국내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지법인금융기관의 비금융·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투자시 외국환은행 신고로 완화
 - 다만, 금융·보험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에 대한 투자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재경부 신고(수리)제로 운용

③ 해외직접투자 수단의 확대

□ 현황 및 필요성

- 현재 투자수단은 현금, 자본채, 국내주식 등으로 한정되어 있으나,
 - 최근 해외주식을 투자수단(주식교환)으로 하는 기업인수합병, 지주사 전환 등의 해외투자형태가 증가되어 해외주식도 포함할 필요가 발생

□ 개선방안

- 해외직접투자 수단에 해외주식을 포함하되,
 - 해외투자를 이용한 편법적인 자본유출 방지를 위해 해외주식의 가격적정성 평가자료는 징구

4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 및 담보 절차 완화

□ 현황 및 필요성

- 30대 계열기업체가 보증한도를 초과하여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에 대해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
 - 또는, 국내은행이 30대 계열기업체의 보증을 받아 현지법인 등의 현지금융에 대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30대 계열기업체는 재정부 신고가 필요
- 일반기업과 동일하게 신고기관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완화하여 보다 신속한 현지금융을 통한 기업의 대외활동 지원
 - ※ 신용등급이 높은 본사 보증을 이용한 현지금융시, 저금리의 자금조달 ⇒ 현지법인설립·운영 용이, 무역활동 확대 ⇒ 기업의 대외활동 촉진

□ 개선방안

- 신고기관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으로 완화하되, 무분별한 해외차입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함께 마련
 - * 30대 계열기업체 현지금융현황에 대한 국세청·금감원 필수 통보제도 등

5 에스프로 계좌 활용시 한은신고 완화

□ 현황 및 필요성

- 해외 M&A 주식대금 송금시 주식매도인이 다수이거나 이행보증금 지급을 위해 에스프로 계좌를 설정하는 경우 한은 신고 사항이나,
- 반복적이고 정형적인 투자형태의 제3자 지급은 신고 예외사항으로 규정할 필요
 - * 해외 부동산투자자와 관련된 에스프로 계좌도 신고예외사항으로 규정

□ 개선방안

- 해외투자시 일정한 요건*하에 신고예외사항으로 허용
 - * 에스프로 계좌주를 기업 M&A를 통한 해외직접투자 업무대리자격 있는 자(피인수기업 대표이사, 현지 변호사 등)의 명의로 설정

IV. 해외 M&A 활성화 지원방안 세부 추진일정

추진과제	주관기관	협조기관	추진일정
1. PEF의 해외 M&A에 대한 규제 완화			
① PEF의 역외 SPC 설립 허용	재경부		07.하
② 역외 SPC에 대한 규제 완화	재경부		07.하
③ PEF의 해외부실채권 투자 허용	재경부		07.하
④ 해외 투자 전용 PEF에 대해서는 출자총액 제한 적용 제외	재경부 공정위		08년~
⑤ 대기업을 PEF 참여시 기업결합신고절차 완화	공정위		07.하
2 해외 M&A 활성화를 위한 금융·세제 지원			
① 수은의 해외 M&A에 대한 채무보증 확대	수은	재경부	07.하
② 해외 M&A시 수은의 유가증권 보증·취득 허용	수은	재경부	08년
③ 간접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적용 확대	재경부		07.하
④ 해외 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	재경부		07.하
3. 해외 M&A 지원 인프라 구축			
① 해외 M&A 전문인력 양성	유관기관	재경부 산자부	07년~
② 해외 M&A 정보수집·제공기능 강화	KOTRA	산자부	07년~
③ 핵심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 우수기업의 M&A 지원	산자부		07년~
④ 해외 M&A 통계 작성 및 분석기능 강화	수은	재경부	07년~
4. 해외직접투자 절차 완화			
① 신고수리 요건 완화	재경부		07.하
② 현지법인금융기관의 자회사 투자시 신고완화	재경부		07.하
③ 해외직접투자 수단의 확대	재경부		07.하
④ 30대 계열기업의 현지금융에 대한 보증·담보 절차 완화	재경부		07.하
⑤ 에스스로 계좌 활용시 한은 신고 완화	재경부		07.하